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중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직부과 그 소관)①~ ② - 생략 - 1. - 생략 - 가 ~ 다 - 생략 - 2. - 생략 - 가. <u>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민 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에 속 하는 사항</u> 3. - 생략 - 가. <u>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 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 하는 사항</u>	제3조(상임위원회의직부과 그 소관) ①~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u>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중 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현행과 같음) 가. <u>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에 속하는 사항</u>